

2023년 10월 04일

Preview

현대 문명에서 CCTV는 개인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장치로 자리잡았고, 이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촬영되는 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회사 내 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회사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민후 소식 Minwho News

‘김경환 변호사, 제3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SW개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개발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마스터캠, 오토카드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리걸이슈

회사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현대 문명에서 CCTV는 개인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필수다. 공공장소는 물론, 회사에서도 CCTV는 일반화 돼, CCTV가 없으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회사 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보호 등 긍정적 면을 넘어 자칫 임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근로감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 내 CCTV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설치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최근 관련 대법원 판례(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
T. 02-532-3425
E. oalmephaga@minwho.kr

군산 소재 A사는 51대 CCTV를 설치했다. 32대는 공장부지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해 울타리를 중심으로 공장부지 외부와 내부를 찍고 막대고정형이라 회전이나 줌 기능은 없고, 나머지 19대는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설치, 근로자들의 직간접적 근로 현장이나 근로자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며 피촬영자를 아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었다.



A사는 51대 CCTV를 설치하며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A사 노조 지회장 등(이하 '피고인')은 설치된 CCTV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못하게 했고, A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해 기소됐다.

원심은 51대 CCTV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피고인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51대 중 32대 CCTV와 19대 CCTV를 구별해 결론을 달리하였는 바, 공장부지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된 32대 CCTV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설치된 19대 CCTV의 경우, 비록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은 바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항 제6호의 A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노사협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 방어 목적으로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단 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회사 내 CCTV 중 임직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거나 또는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노사협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는 바, 향후 회사 내 CCTV 설치나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민후 소식

김경환 변호사, 제3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제3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2021년부터 진행된 행사로, 지난 9월 15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후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치러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발휘함은 물론, 안정성 확보조치 통합고시 등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여러 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위 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연합뉴스 - "플랫폼 개인정보 자율규제에 기여한 김경환 변호사에 국민훈장"](#)

[전자신문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민후 소식

SW개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개발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개발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약정한 개발비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원고가 개발을 의뢰한 기능을 포함한 SW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나 피고 개발물은 당초 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개발물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민후는 피고를 상대로 한 개발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후는 1심에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에 지급한 개발비가 반환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가 개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계약 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피고 개발물이 계약을 통해 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에게 기지급된 개발비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후 소식

마스터캠, 오토캐드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컴퓨터프로그램인 마스터캠, 오토캐드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마스터캠, 오토캐드 각 저작권자(원고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피고가 운영 중인 사업장 PC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수익 원으로 산정, 피고에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곤란에 처한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원고들이 산정·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 프로그램은 수행 가능한 기능에 따라 모듈화하여 제공되고 있었으며, 전체 기능을 포함한 모듈이 아닌 일부 기능만이 가능한 상품으로도 피고가 수행한 업무가 가능하였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후는 이 같은 점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지적하며,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으로 정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입증,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 이상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약 1/3 수준의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